

##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

‘사회적기업육성법’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기업명 (인증번호)	대표자 명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	처분 내용	처분 일자
		근거규정	처분사유		
주식회사 오마이랩 (제2023-162호)	김O서	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제4호	경영악화 등 사회적 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	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(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인증 제한)	26.6.30.

2026. 7. 1.

**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**